

청주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571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5716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소17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성만욱

변론종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6. 2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소174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직원 C은 2022. 12. 20. ‘D’ 사이트에 접속하여 TV, 휴대전화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E 명의의 계좌로 12,240,000원, 2022. 12. 21.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333,8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22. 12. 8.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의 휴대전화로 ‘새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격대상으로 확인되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물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대금을 E 명의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3,573,800원(=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12,240,000원 +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액 1,33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았거나 이 사건 계좌를 대출을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은 피고가 아니라 성명불상자 등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가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별도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E와 'D'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 및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1)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그와 관련하여 패소한 E의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